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 
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15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, 도시와 농어  
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 
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  
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신청 등(안 제3조 ~ 제6조)

다. 공공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위촉 해제, 제척·기피·회피  
(안 제7조 ~ 제10조)

라.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수당 등 규정(안 제11조 ~ 제13조)

1)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- 2)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함을 규정함
- 마. 공공급식센터의 설치, 운영 (안 제14조, 제15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(2019. 5. 2. ~ 5. 22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농어촌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내용은
- 제2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
  - 제3조부터 제6조에서 구청장의 책무,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,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- 제3장은 공공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제13조에서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위원의 위촉 해제,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
  - 제4장은 공공급식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었음.
- 본 조례안은 도농간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3조(급식 관리)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.

## 2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

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**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
2.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
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

4.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다.
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###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,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·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,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